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종합 안내서

2021. 2. 22. 기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관리처

목 차

| | |
|--------------------------------------|----|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개요 | 1 |
| ○ 업무담당자 안내 | 1 |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관련근거 및 업무범위 | 1 |
| ○ 초경량비행장치 정의 | 1 |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 2 |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 3 |
| ○ 신고업무 관련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조항 | 3 |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절차 | 4 |
| ○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번호 표시위치 | 5 |
| ○ 신고번호 표시방법 예시 | 6 |
| ○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 7 |
| □ 매뉴얼 | 8 |
| ○ 무인비행장치 신고(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 8 |
|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APS 원스탑 민원서비스) | 14 |
| □ 참고사항 | 21 |
| ○ 초경량비행장치 신규신고 시 첨부서류 대체 양식 | 21 |
| ○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 24 |
| ○ 무인멀티콥터 주요기체별 중량 현황 | 26 |
| □ 자주하는 질문(Q&A) | 29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개요

○ 업무담당자 안내

-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관련 업무 : 054-459-7942~8
- 온라인 접수 시스템

| 신고 시스템 | 시스템 URL 주소 |
|---------------------|--------------------------------|
| 드론원스탑(무인비행장치) | https://drone.onestop.go.kr |
| APS원스탑(그 외 초경량비행장치) | https://www.onestop.go.kr:8050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관련근거 및 업무범위

-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23조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제302조·제303조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변경신고, 이전신고, 말소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 구분 | 업 무 범 위 | 관련근거 |
|------|-----------------------------------------------------|-------------|
| 신규신고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가 행하는 신고 | 항공안전법 제122조 |
| 변경신고 | 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행하는 신고 | 항공안전법 제123조 |
| 이전신고 |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 | |
| 말소신고 | 비행장치의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행하는 신고 | |

○ 초경량비행장치 정의

| 구분 | 기준 |
|----------------------------------------------------|-----------------------------------------------------------------------------------------------------------------------|
|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좌석이 1개일 것 |
| 행글라이더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 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
| 패러글라이더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
| 기구류 |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나. 계류식(繫留式)기구 |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 회전의 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 동력패러글라이더 |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
| 낙하산류 |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 종류 | | 사업용 | 비사업용 | |
|----------|-------------|------|-----------------------------------------|--------------------------------|
| 동력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비행장치 | 신고필요 | 신고필요 | |
| | 체중이동형 비행장치 | | 신고필요 | |
| 행글라이더 | | | 신고 불필요 | |
| 패러글라이더 | | | 신고 불필요 | |
| 기구류 | | |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신고필요 | |
| 무인비행장치 | 무인 동력 비행 장치 | | 무인비행기 | 신고필요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시 |
| | | | 무인헬리콥터 | |
| | | | 무인멀티콥터 | |
| 무인비행선 | | | 신고필요 *자체중량 12kg초과, 길이 7m 초과 시 | |
| 회전비행장치 | 초경량헬리콥터 | | 신고필요 | |
| |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 | | |
| 동력패러글라이더 | | 신고필요 | | |
| 낙하산류 | | 신고필요 | | |

<신고불필요>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②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 4) 낙하산류
-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 신고업무 | 제출서류 | 신고시기 |
|------|--------------------------------------------------------------------------------------------------------------------------------|------------------------------------------------------------------------------|
| 신규신고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가로 15cm, 세로 10cm의 측면사진) |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안전성인증 대상인 경우) → 안전성인증 받기 전 |
| | |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 30일 이내(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
| 변경신고 | -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신고서 *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30일 이내(변경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
| 이전신고 | -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신고서 * 이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30일 이내(이전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
| 말소신고 |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 | - 15일 이내(말소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

○ 신고업무 관련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조항

- 신고/변경 신고 미이행 상태의 비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 최대 100만원 과태료
-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 말소신고 미이행 : 최대 30만원 과태료

| 위반 사항 | 처벌 조항 | 처벌 기준 | | |
|----------------------------|---------------------|----------------------------|-------|--------|
|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4항 제4호 | 과태료 | 1차 위반 | 50만원 |
| | | | 2차 위반 | 75만원 |
| | | | 3차 위반 | 100만원 |
|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6항 제1호 | 과태료 | 1차 위반 | 15만원 |
| | | | 2차 위반 | 22.5만원 |
| | | | 3차 위반 | 30만원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절차

기체신고 신청서 작성 / 제출
(민원인)

- 규정서식에 맞추어 비행장치 및 소유자 정보 기입
- 제출 필요서류 첨부
- <신고채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
 - * 무인비행장치 : <https://drone.onestop.go.kr>
 - * 무인비행장치 외 : <https://www.onestop.go.kr:8050>
- ※ Fax, e-mail,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가능



신고접수 및 검토
(담당자)

- 기입정보 적정성 확인
- 제출서류 누락, 유효성 여부 확인

(보완 필요 시)



보완요청 및 보완
(담당자/민원인)

(보완 불필요 시)



신고번호 및
신고증명서 발급
(담당자)

- 보완 필요 시 담당자는 보완사유 명시 후 보완요청
- 보완요청을 받은 민원인은 정보수정, 서류 추가첨부 등 보완사항 보완
- 신고내용에 이상 없을 시 담당자는 규정된 양식에 맞춰 신고번호·신고증명서 발급
- * 변경·이전 신고는 기존 신고번호 유지



신고번호 및
신고증명서 발급
(담당자)

- <신고수리기간>
- * 신규, 변경·이전 신고 : 7일 이내
 - * 말소 신고 : 보완사항 없을 경우, 신고서 도달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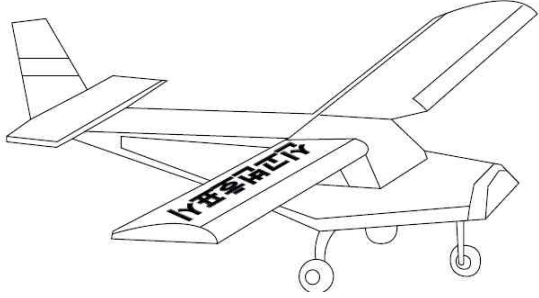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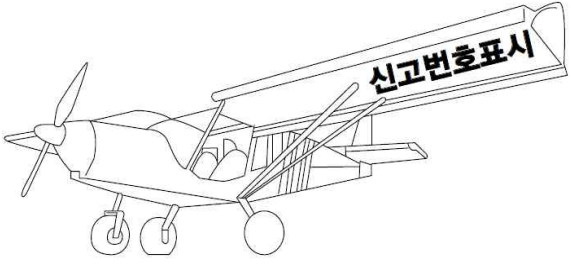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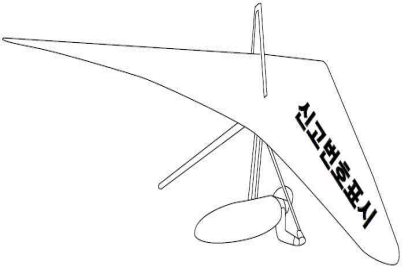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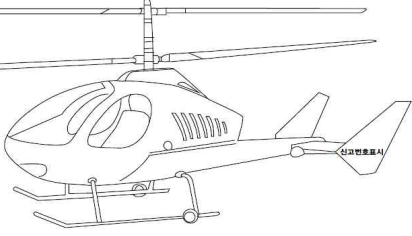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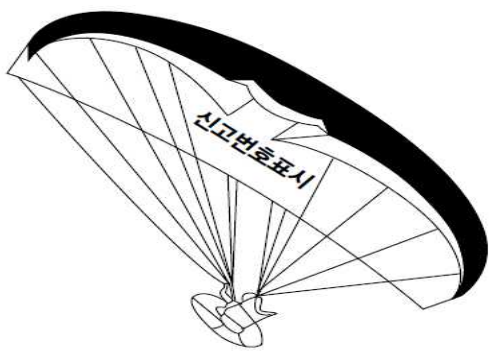


신고증명서 인쇄 및
기체 신고번호 표시
(민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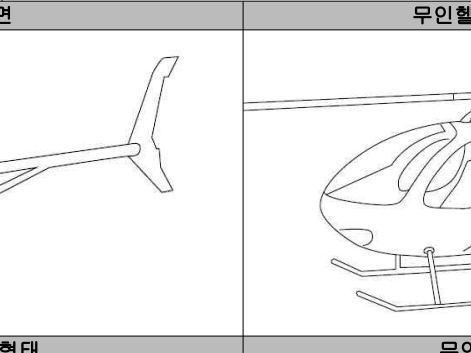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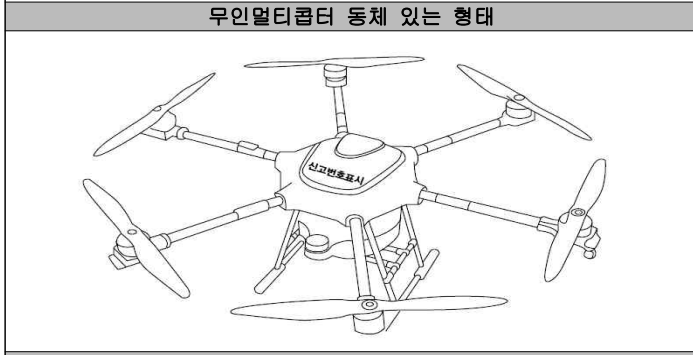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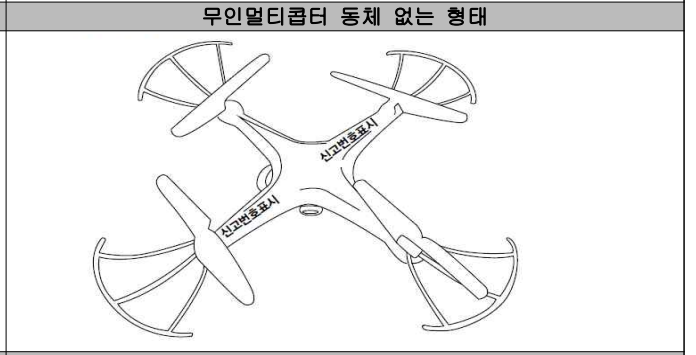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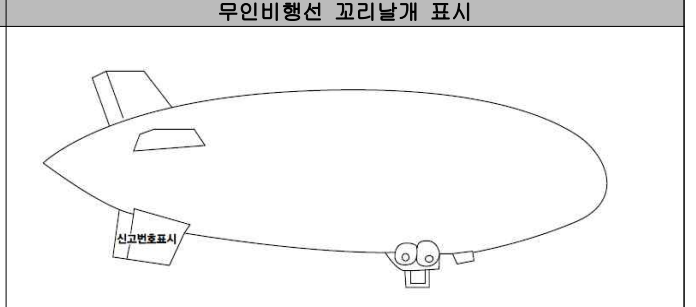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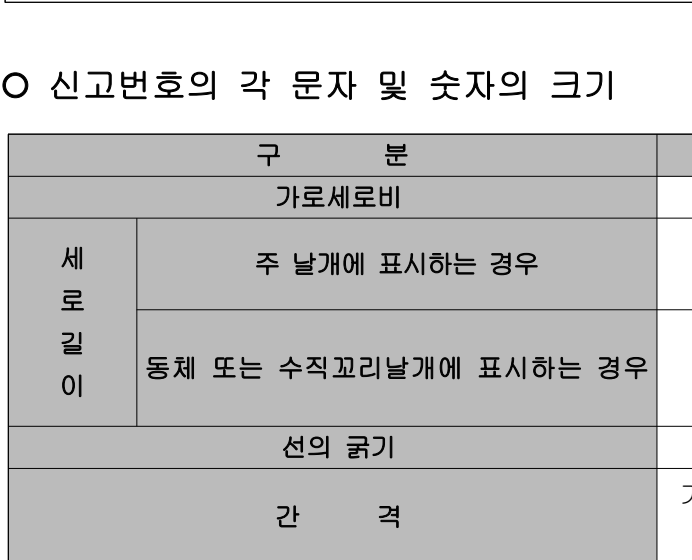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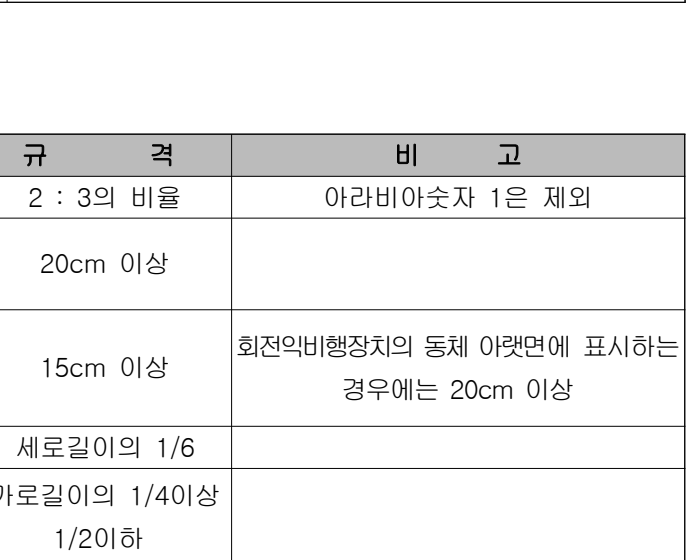
- 발급된 신고증명서 인쇄 후 비행 시 지참
- 발급된 신고번호는 규정 양식에 맞추어 기체에 표시
- * 신고증명서 지참/신고번호 표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01조에 의한 의무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번호 표시위치

| 구 분 | | 표 시 위 치 | 비 고 |
|-----------------------------------|----------|----------------------------------------------------------------------------|-------------------------------------------------------------------------------------------------------------------------------------------------------------------------------------------------------------------------------------------------------------------------|
| 동력비행장치 - 체중이동형 - 타면조종형 | |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 다만, 조종면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신고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고번호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비행장치의 진행방향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신고번호를 동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지상과 수평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횡단면 부근에, 신고 번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한다. |
| 행글라이더 | |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하네스에 표시 | |
|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 | 동체 아랫면,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
|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 | 캐노피 하판 중앙부 및 하네스에 표시 | |
| 기구류 | | 선체(Balloon 등)의 최대횡단면 부근의 대칭 되는 곳의 양쪽면 | |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다만, 조종면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 무인헬리콥터 |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 | | 무인멀티콥터 | ·좌우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프레임 안 * 다만, 동체가 있는 형태인 경우 동체에 부착 |
| | 무인비행선 | |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 신고번호 표시방법 예시

| | | | |
|-------------------------------------------------------------------------------------|------------------------------------------------------------------------------------|--------------------------------------------------------------------------------------|--|
| 동력비행장치 오른쪽 날개 상면 | | 동력비행장치 왼쪽 날개 하면 | |
|  | |  | |
| 행글라이더 오른쪽 날개 상면 | 행글라이더 왼쪽 날개 하면 | 행글라이더 하네스 | |
|  |  |  | |
| 회전익비행장치 동체 아랫면 | 회전익비행장치 동체 옆면 | 회전익비행장치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
|  |  |  | |
|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등 캐노피 하판 | |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등 하네스 | |
|  | |  | |
| 기구류 선체 최대횡단면 부근 대칭되는 양쪽면 | | | |
|  | | | |

| | | |
|-----------------------------------------------------------------------------------------------------------|------------------------------------------------------------------------------------------------------------------|-------------------------------------------------------------------------------------------------------------|
| <p>무인비행기 오른쪽 날개 상면</p>  | <p>무인비행기 왼쪽 날개 하면 및 동체 옆면</p>  | <p>무인비행기 수직꼬리날개 양쪽면</p>  |
| <p>무인헬리콥터 동체 옆면</p>  | <p>무인헬리콥터 수직꼬리날개 양쪽면</p>  | |
| <p>무인멀티콥터 동체 있는 형태</p>  | <p>무인멀티콥터 동체 없는 형태</p>  | |
| <p>무인비행선 동체 옆면 표시</p>  | <p>무인비행선 꼬리날개 표시</p>  | |

○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 구 분 | | 규 격 | 비 고 |
|-------|-----------------------|------------------------|------------------------------------|
| 가로세로비 | | 2 : 3의 비율 | 아라비아숫자 1은 제외 |
| 세로길이 |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 20cm 이상 | |
| |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 15cm 이상 |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20cm 이상 |
| 선의 굵기 | | 세로길이의 1/6 | |
| 간 격 | | 가로길이의 1/40이상 1/20이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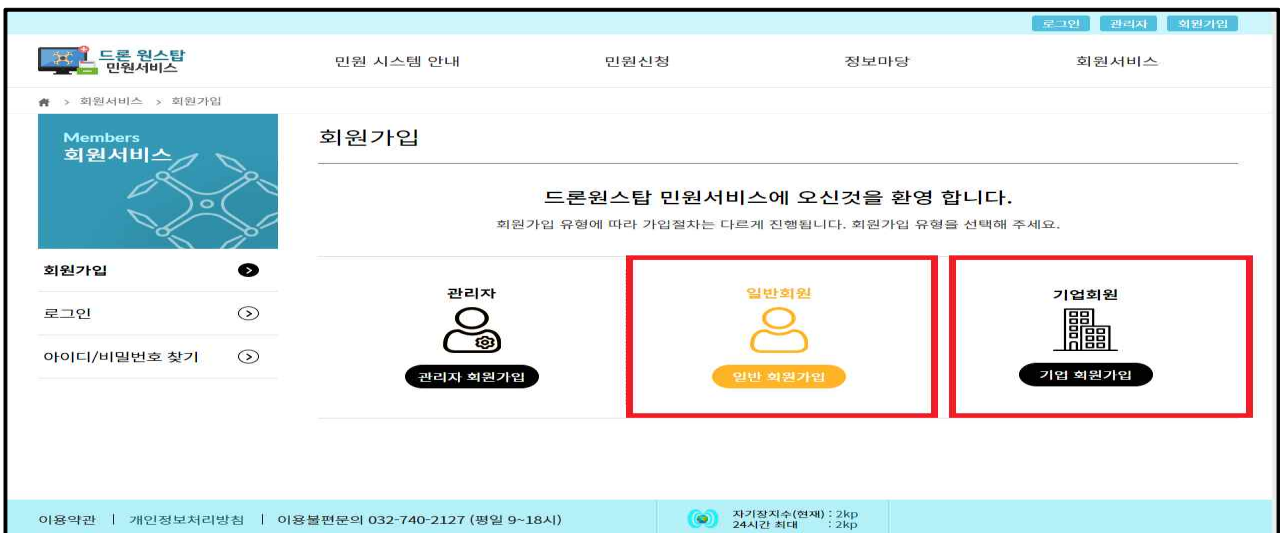
*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배터리, 프로펠러, 착륙장치, 송수신기 등 기타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를 제외한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홈페이지 접속(https://drone.onesto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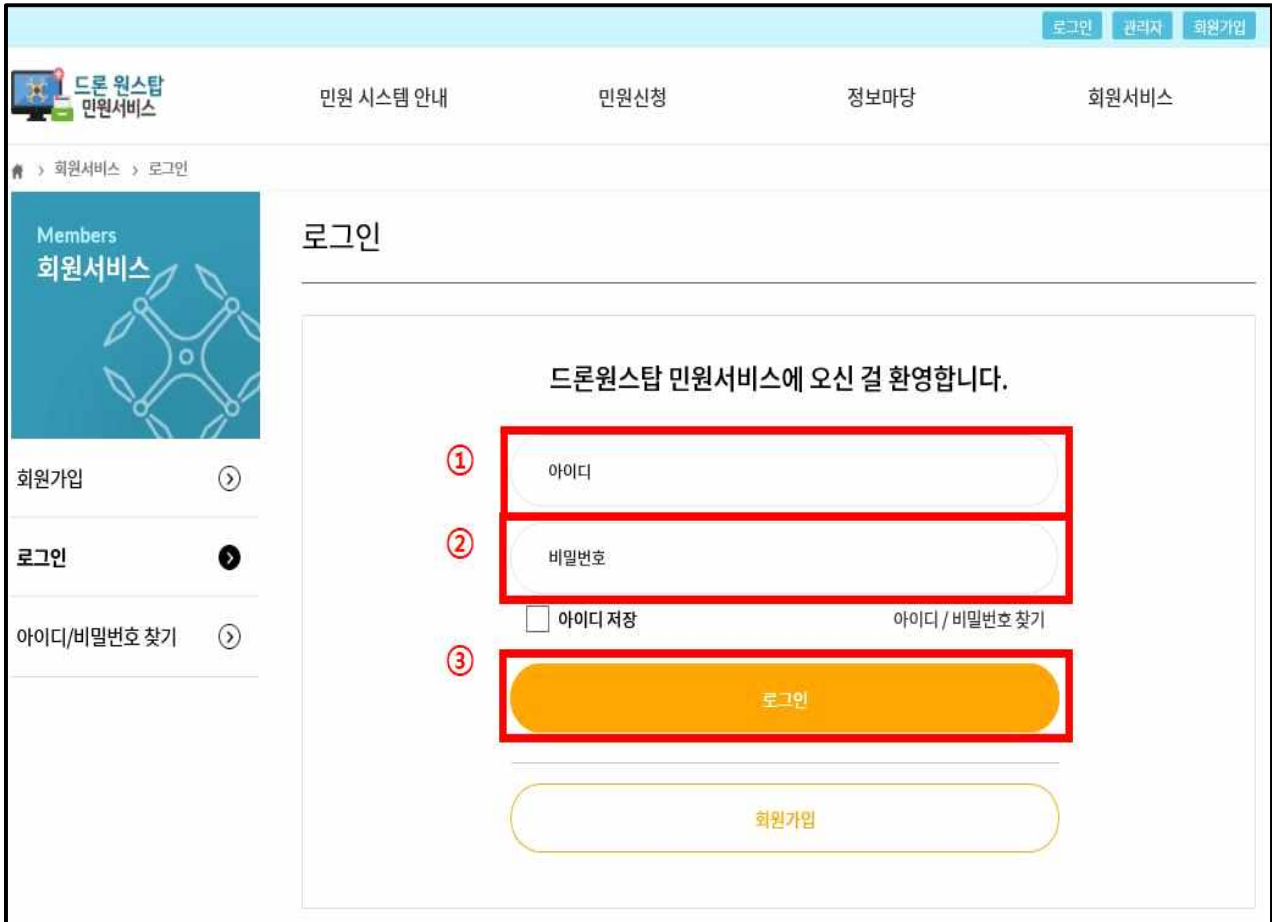
- 최적 브라우저(모바일 접속 가능) : 구글 크롬 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최소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상)



○ 회원가입



○ 로그인



○ 비행장치 신고 메뉴 : 민원신청 → 비행장치 신고



○ 비행장치 신고 신청서 작성

- 유형 → ①신규/②변경·이전/③말소 클릭 후 비행장치 신고 정보 빠짐없이 기재
- 변경·이전 신고 시, 변경 이후의 신고 정보(비행장치, 소유자 등)로 기재

* 신청서 작성 예시

| | | | |
|------------|---------------------|------------|-------------------|
| 종류 | 무인멀티콥터 | 신고번호 | 신규신고시에는 신고번호 입력 x |
| 형식·모델 | 매빅2 프로 | 용도 | 영리 |
| 제작자 | DJI | 제작번호 | 제작번호 입력 |
| 제작연월일 | 2019.01.01. | 규격 | 길이×폭×높이(mm) |
| 중량구분 | 최대이륙중량 250g초과~2kg이하 | 최대이륙중량(Kg) | 0.907 |
| 자체중량(Kg) | 0.907 | | |
| 보관처 | 주소검색 후 입력 | | |
| 카메라 등 탑재여부 | 탑재 | 상세설명 | 자체 카메라 탑재 |

- 제출서류 첨부

- * 변경·이전 신고 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증명서” 칸에 변경·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하여 파일 업로드
- * 말소 신고 시 첨부파일 부분은 비활성화 되므로 파일첨부 없이 접수 가능
- * 접수” 버튼 클릭 시, 관할기관으로 접수신청 완료
- *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시,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에서 “작성중”으로 저장

○ 신고 접수 결과 확인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현황에서 신청 민원별 처리상태 조회 가능
- * 신청완료된 민원 “신청” 또는 “처리중”
- * 처리완료된 민원 “자체종결”, 또는 “보완요구”

민원 신청 현황

접수하신 민원문서의 상태는 '신청' 이며 담당 공무원이 민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상태가 '처리중' 으로 변환 후 부터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리상태 전체 신청민원 전체 전체

| No. ↓ | 신청번호 ↓ | 신청민원 ↓ | 처리상태 ↓ |
|-------|-----------------------------|-----------------------------------------|----------------------------------------------------------------------------------|
| 8 | 201208-0573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신규) - 형식·모델: Blueye-1K | 처리중 |
| 9 | 201208-0565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변경.이전) - 형식·모델: IA-3 Colibri | 처리완료 |
| 10 | 201208-0560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변경.이전) - 형식·모델: IA-3 Colibri | 보완요구 |
| 11 | 201208-0550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신규) - 형식·모델: 인스파이어 1급 | 처리중 |
| 12 | 201208-0547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신규) - 형식·모델: 인스파이어 1급 | 처리완료 |

8 - 12 / 전체 12 건 이전 1 2 다음

○ (보완요구 시) 보완사항 보완방법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현황 → 처리상태 “보완요구” 해당 신청번호 클릭

민원 신청 현황

접수하신 민원문서의 상태는 '신청' 이며 담당 공무원이 민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상태가 '처리중' 으로 변환 후 부터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리상태 전체 신청민원 전체 전체

| No. ↓ | 신청번호 ↓ | 신청민원 ↓ | 처리상태 ↓ |
|-------|-----------------------------|-----------------------------------------|----------------------------------------------------------------------------------|
| 8 | 201208-0573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신규) - 형식·모델: Blueye-1K | 처리중 |
| 9 | 201208-0565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변경.이전) - 형식·모델: IA-3 Colibri | 처리완료 |
| 10 | 201208-0560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변경.이전) - 형식·모델: IA-3 Colibri | 보완요구 |
| 11 | 201208-0550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신규) - 형식·모델: 인스파이어 1급 | 처리중 |
| 12 | 201208-0547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신규) - 형식·모델: 인스파이어 1급 | 처리완료 |

8 - 12 / 전체 12 건 이전 1 2 다음

- 민원처리결과 보완사항 확인 → 상단의 “불러오기” 선택 → 팝업창 열림

비행장치 신고 (신규 / 변경·이전 / 말소)

처리기간 7일
보완요구

불러오기

접수(처리)부서별 연락처

신청서 미리보기

민원처리결과

| | |
|------|--------------|
| 첨부파일 | 일반 첨부파일 총 0건 |
| 보완사항 | 증빙자료 다시첨부 |

유형

유형 신규 변경·이전 말소

비행장치

1.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비영리용도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비영리 용도 무인비행선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 | | | |
|------------|-----------------------------------------------------------------------------------------------------------------------------|-------------------------------------|--------------------------------------|--------------------------|
| 종류 | 무인멀티콥터 | 신고번호 | <input type="text"/> | 신고번호 |
| 형식·모델 | <input type="text"/> | 용도 | <input checked="" type="radio"/> 비영리 | <input type="radio"/> 영리 |
| 제작자 | <input type="text"/> | 제작번호 | 000-000-1 | |
| 제작연월일 | 2020-12-01 | | | |
| 자체중량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2kg 이하 | 규격 | <input type="text"/> | |
| 자체중량(Kg) | 2.2 | 최대이륙중량(Kg) | 5 | |
| 보관처 | <input type="text"/> 주소검색 | | | |
| 카메라 등 탑재여부 | <input type="radio"/> 미탑재 | <input checked="" type="radio"/> 탑재 | 상세설명 | <input type="text"/> |

- 팝업창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신청민원의 “신청번호” 클릭

민원신청 > 비행장치 신고

Civil application
민원신청

비행장치 신고 (신규 / 변경·이전 / 말소)

처리기간 7일
보완요구

불러오기 X

기간 - 1주일 1개월 3개월

처리상태 전체 전체 🔍

| No. ↓ | 신청번호 ↓ | 신청민원 | 처리상태 |
|-------|-----------------------------|-----------------------------------------|------|
| 6 | 201208-0579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신규) - 형식·모델: 메빅 | 처리중 |
| 7 | 201208-0577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신규) - 형식·모델: Blueye-1K | 처리중 |
| 8 | 201208-0573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신규) - 형식·모델: Blueye-1K | 처리중 |
| 9 | 201208-0565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변경·이전) - 형식·모델: IA-3 Colibri | 처리완료 |
| 10 | 201208-0560 (2020-12-08) | 비행장치신고 (변경·이전) - 형식·모델: IA-3 Colibri | 보완요구 |

6 - 10 / 전체 12 건

이전
1
2
3
다음

- 해당내용 보완 후 접수버튼 클릭

보급

가입유무 ● 미가입 ● 가입 상세설명 제3차 대인대응 손해보험 가입 #3차 대인

변경·이전사항

변경·이전전 ● 소유자 변경(실허임)

변경·이전후 ● 소유자 변경(실허임)

첨부파일

※ 해당서류 미첨부시 신청서가 보완요구되니 반드시 첨부바랍니다.

| | | | | | |
|--------|-----------------|----------------|--------|------|--------|
| 첨부파일 ● |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 | 인스파이어.jpg 32KB | Q 미리보기 | 음 삭제 | 파일 업로드 |
| | 초경량비행장치 재원및성능표 | 인스파이어.jpg 32KB | Q 미리보기 | 음 삭제 | 파일 업로드 |
|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증명서 ● | 인스파이어.jpg 32KB | Q 미리보기 | 음 삭제 | 파일 업로드 |

접수 부서 및 담당자 서울지방항공청(항공정보과) [시스템관리자 | ☎ 032-740-2127]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제12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 301조 제1항 ● 제 302조 제2항 ● 제 303조 제1항 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 신규 ● 변경·이전 ● 말소 음(들) 신고합니다.

2020년 12월 08일 신고인: 실허임
 관할지방항공청장 귀하

접수 영사저장 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처리기간 (지방항공청) 검토 처리기간 (지방항공청) 등록 처리기간 (지방항공청) 신청연예금 등지

○ 신고증명서 출력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현황에서 처리 완료된 신청번호 클릭 후 상단 첨부파일*의 신고증명서 다운

* 첨부파일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1부, 비행 시 참고자료 등 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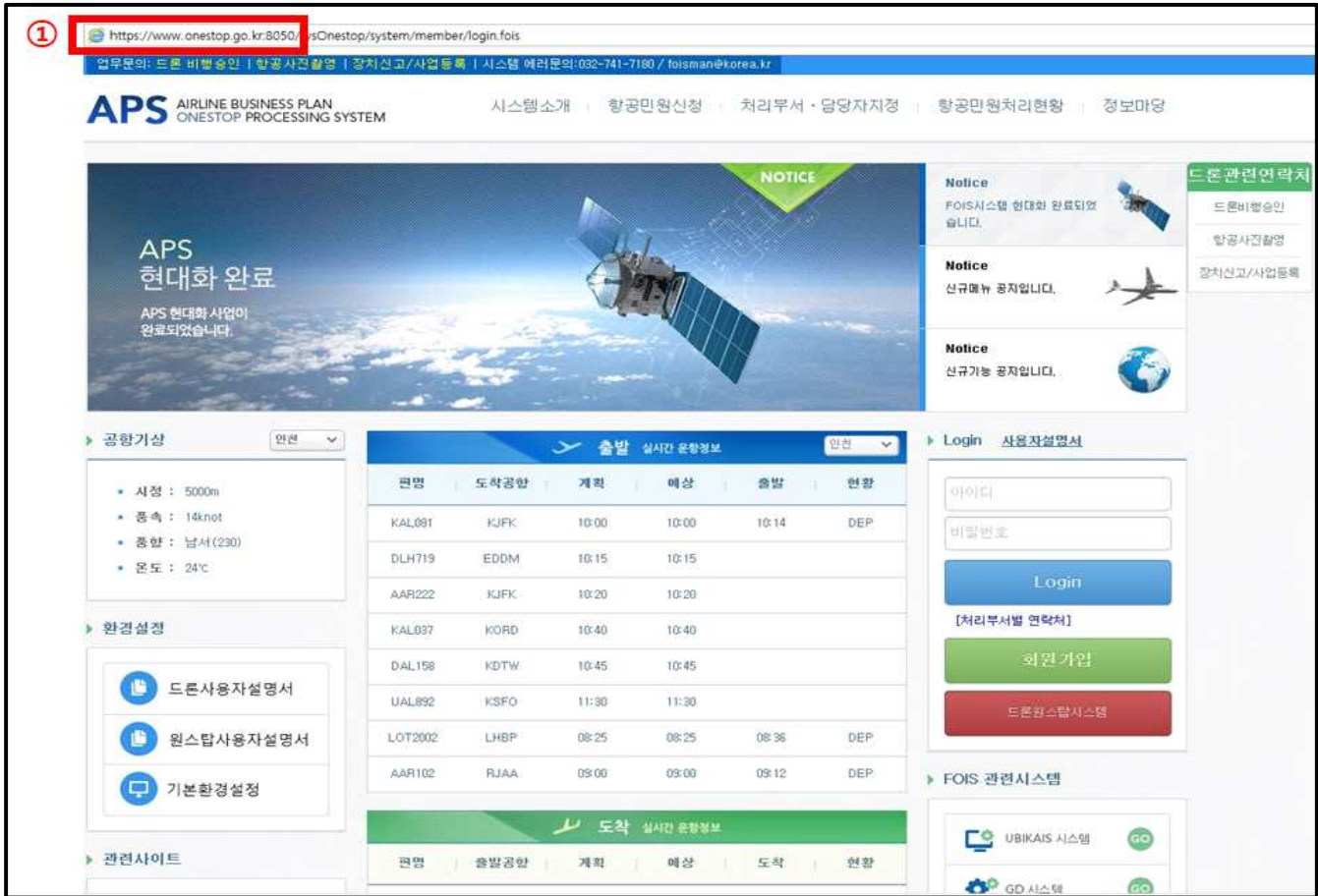
비행장치 신고 (신규/변경·이전/말소) 처리기간 7일 처리완료

블러가기 접수(처리)부서별 연락처 신청서 미리보기

민원처리결과

| | |
|------|------------------------------------------|
| 첨부파일 | 일반 첨부파일 총 1건 신고증명서.jpg 32KB Q 미리보기 |
| 보완사항 | 승인처리 되었습니다. |

○ 홈페이지 접속(https://www.onestop.go.kr:8050)



○ 회원가입

- 회원가입 페이지 내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클릭



- 사용자정보 입력 후 “Save” 클릭

* 사용자 구분 - 일반회원(초경량·일반) 선택 필수

회원 신청서

① 사용자구분 * 일반회원(초경량·일반) 드론 이외의 초경량·일반(헬기 등) 비행장치 소유자. 회원 가입 후, 관리자 승인 없이 바로 이용 가능

아이디 * 중복확인

비밀번호 *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9자이상 20자이하로 작성해주세요.

비밀번호확인 *

사용자 이름 *

사용자 연락처 - -

회사명 회사 업무상 회원가입시 회사명 입력

회사 신청인 연락처 - -

항공사CAO코드 외항사

개인정보 동의
 [필수]이용약관 동의
 [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1 동의
 [선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2 동의

② Save Close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규신고

- 항공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클릭

업무문의: 드론 비행승인 | 항공사진촬영 | 장치신고/사업등록 | 시스템 예러문의:032-741-7180 / foisman@korea.kr 한국안전교통공 트그아웃

APS AIRLINE BUSINESS PLAN ONESTOP PROCESSING SYSTEM

시스템소개 **항공민원신청** 처리부서·담당자지정 항공민원처리현황 정보마당

| 시스템소개 | 항공민원신청 | 처리부서·담당자지정 | 항공민원처리현황 | 정보마당 |
|--------------|----------------|----------------|----------------|------|
| 전자처리 대상 인허가 | 신청서작성 | 처리부서·담당자 지정 | 민원결과조회 | 공지사항 |
| 시스템개념도 | 비정상운항보고 작성 NEW | 시행문서조회 | 시행문서 | Q&A |
| 민원처리시스템 개요 | Registrations | 처리된 편명조회 | 처리된 편명조회 | |
| 인허가 기관시스템 개요 | 동해,계스케줄 엑셀양식 | 비행장치비행계획 승인조회 | Seasonal 조회 | |
| | | 초경량비행장치 인증유효현황 | Daily 조회 | |
| | | 경량항공기 인증유효현황 | 비정상운항보고 조회 NEW | |
| | | 장치신고현황 | | |
| | | 사업등록현황 | | |
| | | 비행승인신청서(드론)현황 | | |

- 기타 민원문서 카테고리의 “장치신고” 클릭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선택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신청완료

신청서 선택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문서를 선택하신 후 작성해 주십시오. (사업변경신고서는 처리부가 지방청 항공운항과 항공정보실이 동일합니다)
 (* 일괄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처리기한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원문서

- <벨리콥터>소형항공공기운송사업/항공기사업계획변경신고 **신고**
- <벨리콥터>소형무장기편 운항허가 신청서 **허가**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승인**
- 영공통과허가신청서 **허가**
- 이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착륙 **허가**
- 통제공역 비행 **허가**
- 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
-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허가**
- 곡예비행 **허가**
- 낙하산 강하 **허가**
-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
-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 이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착륙/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허가**
- ① - 장치신고 **신고**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규/변경·이전/말소 구분 선택 → 신청인 정보 기입 → 비행장치 정보 기입

* 변경·이전 신고 시 변경 이후 정보(신청인, 비행장치, 소유자)로 기입 후 변경·이전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필요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 불러오기

신규
 변경·이전
 말소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

처리기간: 7일

허가문서

신청인

비행장치

신청한 문서가 처리완료 상태가 되어 담당 공무원이 허가문서를 첨부해 주면 여기서 허가문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성명/영칭 한국안전교통공단 · 생년월일

·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텍스) - -

· 종류 동력비행장치(체종미동형) · 신고번호

· 형식 · 용도 ○ 영리 ● 비영리

· 제작자 · 제작번호

· 보관처 우편번호

· 제작연월일

· 자체중량 kg · 최대이륙중량 kg

· 카메라등 탑재여부 ○ 탑재함 ● 탑재하지 않음

- “저장하기” 버튼 클릭 이후 반드시 페이지 상단 “접수” 버튼 클릭



○ 결과 확인

- 항공민원처리현황 → 민원결과조회 접속



- 민원결과조회 페이지 내 처리상태 확인



○ (보완요구 시) 보완사항 보완방법

- 민원결과조회 페이지 내 상태 “보완요구”인 접수내역 더블클릭

항공민원처리결과 *접수하신 민원문서의 상태는 '신청'이며 담당 공무원이 민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상태가 '처리중'으로 변환후부터 처리기간에 적용됩니다.

민원결과조회 [처리부서별 연락처]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전체: 3 | 작성중: 0 | 신청: 1 | 처리중: 0 | 처리완료: 1 | 보완요구: 1

2020-07-11 ~ 2020-08-10 접수 전체 항공사 항공사번호 상태 선택 전체 Search

| # | 접수일자 | 항공사문서번호 | 사업개역명 | 처리부서 | 시행문서 | 상태 | 신청주소 |
|---|------------|--------------|-------|-----------------|---------------|------|------|
| 1 | 2020-08-10 | (2020.08.10) | 장지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 | | 신청 | |
| 2 | 2020-08-06 | (2020.08.06) | 장지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 | | 보완요구 | |
| 3 | 2020-08-06 | (2020.08.06) | 장지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 | 한국안전교통공단-TEST | 처리완료 | |

- 접수내역 페이지 하단 내 “보완요구사유” 확인 및 보완

변경 이전사항
변경 이후사항
말소사유

첨부파일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TEST.JPG 삭제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TEST.JPG 삭제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15cm X 세로 10cm) TEST.JPG 삭제

접수부서 담당자 지정 한국안전교통공단 한국안전교통공단 (신청인주소 관할부서 및 담당자로 자동 지정됩니다)

① * 보완요구사유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미함부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1조 제1항
 제 302조 제1항 매 따라
 제 303조 제1항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규
 변경·이전 을(를) 신고합니다.
 말소

- 보완 후 접수내역 페이지 상단 “접수” 클릭

신청서 작성 신청서 선택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신청완료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 목록 인쇄 PDF 저장 ① 접수 삭제

신규
 변경·이전
 말소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 처리기간 7일

허가문서 신청한 문서가 처리완료 상태가 되어 담당 공무원이 허가문서를 첨부해 주면 여기서 허가문서 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허가문서
 찾아보기... upload
 찾아보기... upload
 찾아보기... upload

○ 신고증명서 인쇄

- 민원결과조회 페이지 내 상태 “처리완료”인 접수내역 더블클릭

항공민원처리결과

“접수하신 민원문서의 상태는 ‘신청’이며 담당 공무원이 민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상태가 ‘처리중’으로 변환후부터 처리기간에 적용됩니다.”

민원결과조회 [처리부서별 연락처]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전체: 3 | 작성중: 0 | 신청: 1 | 처리중: 0 | 처리완료: 1 | 보완요구: 1

2020-07-11 ~ 2020-08-10 접수 전체 항공사 항공사 문서번호 상태 선택 전체 Search

| # | 접수일자 | 항공사문서번호 | 사업개혁명 | 처리부서 | 시행문서 | 상태 | 신청주소 |
|---|------------|--------------|-------|-----------------|---------------|------|------|
| 1 | 2020-08-10 | (2020.08.10) | 장치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 | | 신청 | |
| 2 | 2020-08-06 | (2020.08.06) | 장치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 | | 보완요구 | |
| 3 | 2020-08-06 | (2020.08.06) | 장치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 | 한국안전교통공단-TEST | 처리완료 | |

- 접수내역 페이지 상단 “허가문서” 내 발급된 신고증명서 클릭 및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선택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신청완료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

목록 인쇄 PDF 저장

신규
 변경·이전
 발송

처리기간
7월

신청한 문서가 처리완료 상태가 되어 담당 공무원이 허가문서를 첨부해 주면 여기서 허가문서 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허가문서 신고증명서.JPG

찾아보기...
찾아보기...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 확인서

- 해당 서식은 소유증빙자료(구매영수증, 매매계약서, 제작증명서 등)가 없을 경우에 활용

“이 문서는 전산망에 의한 문서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소유 확인서

1. 형식(모델명) :

1. 제작번호(시리얼번호) :

1. 소유자 :

1. 소유증빙서류 미체출 사유(구입경로) :

1. 구입(제작) 일자 :

21. . . 현재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 소유 확인서는 기체신고 민원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 허위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작성자(신청인)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일자 :

신청인 성명 :

소유자와의 관계 :

신청인 연락처 :

서 명 생 략

○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제원표를 첨부하며, 해당서식은 제작사의 제원표가 없을 경우에 활용

“이 문서는 전산망에 의한 문서입니다.”

제원 및 성능표

| | | | | |
|------------------|------------------|--|------|--|
| 주 요 제 원 | *자체중량 (kg) | | 최고속도 | |
| | *최대이륙중량 (kg) | | 엔진형식 | |
| | *길이×폭×높이 (mm) | | 연료중량 | |

*별 표시는 필수입력 값이며, 고정 단위에 맞춰서 기재

ex) 단위환산 1g=0.001kg, 1kg=1000g, 0.01m=1cm=10mm, 1m=100cm=1000mm

-최고속도는 제작사 제원표상에 있으면 기재 (없으면 공란 처리)

-엔진형식은 엔진으로 구동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해당되면 기재 (모터는 제외)

-연료중량은 연료로 구동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해당되면 기재 (배터리는 제외)

서 명 생 략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번호 인쇄 서식

- 해당 인쇄 서식은 예시(참고용)으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로 수정하여 활용

[무인동력비행장치 표시예시] ⇒ **부여받은 신고번호로 수정하여 활용**



C3CM0000001

15cm(HY 헤드라인 M, 50pt)



C3CM0000001

10cm(HY 헤드라인 M, 30pt)



C3CM0000001

5cm(HY 헤드라인 M, 15pt)
































C3CM0000001

3cm(HY 헤드라인 M, 10pt)

| | | |
|---------|-------------------------------------------------------------------------------------------------------------|----------------------------------------------------------------------------------------------------------------------------------------------------------------------------------------------------------------------------------------------------------------------------------------------------------------------------------------------|
| 동력 비행장치 |  <p><타면조종형 비행장치></p> | <p>자체중량(115 Kg) 및 좌석수(1인승)의 제한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일반 항공기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조종면, 동체, 엔진, 착륙장치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타면조종형이라고하는 이유는 주날개 및 꼬리날개에 있는 조종면(도움날개, 방향타, 승강타)을 움직여, 양력의 불균형을 발생시킴으로써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의무신고대상 : 자체중량 115kg 이하이며, 좌석 1개인 것</p> |
| |  <p><체중이동형 비행장치></p> | <p>활공기의 일종인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해 왔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평지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여 개발하였다. 타면조종형과 같이 자중 (115 Kg) 및 좌석수 (1인승)의 제한을 받는다. 타면조종형 비행장치의 고정된 날개와는 달리 조종면이 없이 체중을 이동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한다. 또한, 날개를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신소재의 개발로 점차 경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p> <p>의무신고대상 : 자체중량 115kg 이하이며, 좌석 1개인 것</p> |
| 행글라이더 |  | <p>행글라이더는 가벼운 알루미늄합금 골조에 질긴 나일론 천을 씌운 활공기로서,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으며, 약 20~35kg의 경량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운반할 수 있다. 사람의 체중을 이동시켜 조종한다.</p> <p>의무신고대상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행글라이더</p> |
| 패러글라이더 |  | <p>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낙하산의 안정성, 분해, 조립, 운반의 용이성과 행글라이더의 활공성, 속도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p> <p>의무신고대상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패러글라이더</p> |
| 기구류 |  | <p>기구란,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비행장치이다. 기구는 비행기처럼 자가 날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장치가 없다. 한번 뜨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만 흘러 다니는, 그야말로 풍선이다. 같은 기구라 하더라도 운용목적에 따라 계류식기구와 자유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비행훈련 등을 위해 케이블이나 로프를 통해서 지상과 연결하여 일정고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계류식기구라고 하고, 이런 고정을 위한 장치 없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을 자유기구라고 한다.</p> <p>의무신고대상 :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신고</p> |
| 무인비행장치 |  <p><무인비행기></p> | <p>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항공기와 거의 같고, 레저용으로 쓰이거나, 정찰, 항공촬영, 해안 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p> <p>의무신고대상(아래 모두 신고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무인비행기 2) 비사업용으로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자체중량 150kg이하 기체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제외) |
| |  <p><무인헬리콥터></p> | <p>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회전익항공기와 거의 같고,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활용되고 있다.</p> <p>의무신고대상(아래 모두 신고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무인헬리콥터 |

| | | |
|-----------|----------------------------------------------------------------------------------------------------------|----------------------------------------------------------------------------------------------------------------------------------------------------------------------------------------------------------------------------------------------------------------------------------------------------------------------------------------------------------------------------------------------------------|
| |  <p><무인멀티콥터></p> | <p>2) 비사업용으로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자체중량 150kg이하 기체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제외)</p> <p>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헬리콥터와 유사하나 양력을 발생하는 부분이 회전익이 아니라 프로펠러 형태이며 각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조정하여 방향 및 양력을 조정한다. 사용처는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p> <p>의무신고대상(아래 모두 신고대상)</p> <p>1)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무인멀티콥터 2) 비사업용으로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자체중량 150kg이하 기체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제외)</p> |
| |  <p><무인비행선></p> | <p>가스기구와 같은 기구비행체에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비행체이며, 추진장치는 전기식 모터, 가솔린 엔진 등이 사용된다. 각종 행사 축하비행, 시범비행, 광고에 많이 쓰인다.</p> <p>의무신고대상(아래 모두 신고대상)</p> <p>1)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무인비행선 2) 비사업용으로 자체무게 12kg~180kg, 길이 7m~20m의 기체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제외)</p> |
| 회전의 비행장치 |  <p><초경량헬리콥터></p> | <p>일반 항공기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같지만, 자중 (115kg) 및 좌석수 (1인승)의 제한을 받는다.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 위에 있는 주회전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양력을 발생시키고, 주회전날개의 회전면을 기울여 양력이 발생하는 방향을 변화시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발생된다. 또한, 꼬리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조종을 할 수 있다.</p> <p>의무신고대상 : 자체중량 115kg 이하이며, 좌석 1개인 것</p> |
| 네트 패러글라이더 |  | <p>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력 작용에 의하여 회전하는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자중 (115kg) 및 좌석수 (1인승)의 제한을 받는다. 헬리콥터는 주회전날개에 엔진 동력을 전달하여 추력과 양력을 얻는 데 반해, 자이로플레인은 동력을 프로펠러에 전달하여 추력을 얻게 되고 비행장치가 전진함에 따라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주회전날개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는다.</p> <p>의무신고대상 : 자체중량 115kg 이하이며, 좌석 1개인 것</p> |
| 낙하산류 |  | <p>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이다. 조종자의 등에 엔진을 매거나, 패러글라이더에 동체(Trike)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으며, 조종줄을 사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한다.</p> <p>높은 산에서 평지로 뛰어 내리는 것에 비해 낮은 평지에서 높은 곳으로 날아 올라 비행을 즐길 수 있다.</p> <p>의무신고대상(아래 모두 신고대상)</p> <p>1) 착륙장치가 없는 장치 2) 착륙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115kg 이하이며, 좌석 1개인 장치</p> <p>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이다.</p> <p>의무신고대상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낙하산류</p> |

| 최대이륙중량 기준 | 제조사 | 사진 | 모델명 | 자체중량 (단위 : g) | 최대이륙중량 (단위 : g) |
|------------------|---------|-------------------------------------------------------------------------------------|----------|---------------|-----------------|
| 250g 이하 | DJI |  | 매빅미니 | 249 | 249 |
| 250g 초과 2kg이하 | DJI |  | 스파크 | 300 | 300 |
| | 패럿 |  | 아나피 | 320 | 320 |
| | 패럿 |  | 비밥1 | 400 | 400 |
| | DJI |  | 매빅에어 | 430 | 430 |
| | 협산 |  | h501s 금 | 450 | 450 |
| | 패럿 |  | 비밥2 | 500 | 500 |
| | 샤오미 |  | 피미 A3 | 560 | 560 |
| | DJI |  | 매빅에어2 | 570 | 570 |
| | 협산 |  | 지노1 | 700 | 700 |
| | DJI |  | 매빅프로 | 734 | 734 |
| | 패럿 |  | 디스코 | 750 | 750 |
| | 스카이드ิโอ |  | 스카이드ิโอ2 | 775 | 775 |
| | 샤오미 |  | 피미 X8 SE | 790 | 790 |

| 최대이륙중량 기준 | 제조사 | 사진 | 모델명 | 자체중량 (단위 : g) | 최대이륙중량 (단위 : g) |
|--------------|-----------------|-------------------------------------------------------------------------------------|-------------------------------------------------------------------------------------|------------------|--------------------|
| | Autel |  | Evo | 863 | 1,000 |
| | DJI |  | 매빅2 엔터프라이즈 듀얼 | 899 | 1,100 |
| | DJI |  | 매빅2 엔터프라이즈 줌 | 905 | 1,100 |
| | DJI |  | 매빅2 줌 | 905 | 905 |
| | DJI |  | 매빅2 프로 | 907 | 907 |
| | 협산 |  | 지노2 | 915 | 915 |
| | 협산 |  | h109s 급 | 1,060 | 1,420 |
| | Autel |  | Evo2 | 1,150 | 2,000 |
| | DJI |  | 팬텀3 급 | 1,216 | 1,216 |
| | 샤오미 |  | 미드론 1080p/4K | 1,376 | 1,376 |
| | DJI |  | 팬텀4 급 | 1,380 | 1,380 |
| | 유닉 |  | 타이푼 h3 | 1,610 | 2,000 |
| | 2kg 초과 7kg이하 | 유닉 |  | h520 급 | 1,633 |
| 유닉 | |  | 타이푼 h plus | 1,645 | 2,086 |
| 유닉 | |  | 타이푼 h | 1,695 | 2,100 |

| 최대이륙중량 기준 | 제조사 | 사진 | 모델명 | 자체중량 (단위 : g) | 최대이륙중량 (단위 : g) |
|------------------|-----|-------------------------------------------------------------------------------------|--------------|------------------|--------------------|
| | DJI |  | 매트리스 100 급 | 2,355 | 3,600 |
| | DJI |  | 인스파이어1 급 | 2,845 | 3,500 |
| | DJI |  | 인스파이어2 급 | 3,440 | 4,000 |
| | DJI |  | 매트리스 200 급 | 4,570 | 6,140 |
| 7kg 초과 25kg이하 | DJI |  | 매트리스 300 급 | 6,300 | 9,000 |
| | DJI |  | 매트리스 600 급 | 9,100 | 15,100 |
| | DJI |  | Agras MG-1 급 | 13,800 | 24,800 |
| 25kg 초과 | DJI |  | Agras T16 | 18,500 | 41,000 |

※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사에서 제공한 제원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제원 확인을 위하여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제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Q&A)

○ (질문 1) 비행장치 신고 이후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정 처리기간은 7일로, 신고신청 업무량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보완요구 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재통지합니다.

○ (질문 2) 법인 소유의 기체 신고시, 신고서 내의 생년월일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 (답변) 해당 법인의 설립일을 기재합니다.

○ (질문 3) 영리, 비영리 기체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 될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영리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치의 경우 비영리로 신고합니다.

☞ (답변) 비영리로 신고한 후 해당 비행장치를 사업용으로 쓸 경우 영리로 변경·이전 신고 필요합니다.

※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이란?

1. **항공기대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항공레저스포츠용 대여는 제외)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
 -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 2)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 4) 조종교육
 -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 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1)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 가.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 나. 경량항공기
 - 다. 초경량비행장치
 - 3)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 (질문 4) 신규신고 시 제출서류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세부내역이 없는 경우, 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등 포함), 거래명세서(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매계약서, 제작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답변) 해당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정보, 구입경로, 구입일자, 제품번호 등을 기재 하고, 해당기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자필서명이 들어간 소유확인서 제출합니다.

○ (질문 5) 초경량비행장치 신청서 내용 중 제작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제작사에서 제작번호를 발급하는 기체의 경우 제작사에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답변) 자체제작일 경우, 제작사(개인)가 직접 모델명과 제작번호를 중복되지 않게 부여 하여 자체 관리하시면 됩니다.

○ (질문 6)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이 무엇인가요?

☞ (답변) 자체중량은 연료, 장비*, 화물, 승객 등을 포함하지 않은 항공기의 중량(무인 동력비행장치는 배터리 무게를 포함)입니다.

* 장비는 비행과 관련없고 탈부착 및 적재 가능한 것: 탈착되는 짐벌 및 카메라, 약제, 낙하산, 에어백, 구명환 등

☞ (답변) 최대이륙중량은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서 설계상 또는 운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입니다.

○ (질문 7)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이 동일한 기체는 무엇인가요?

☞ (답변) 제작사의 기준에 따라서, 설계상 추가 부속품을 장착할 수 없거나 또는 추가 적재를 권장하지 않는 운영상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기체들은 자체중량과 최대 이륙중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질문 8) 초경량비행장치 사진은 어떤 사진을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측면사진을 촬영(가로 15cm, 세로 10cm)의 하여 제출하되, 인터넷에 있는 동일기체 사진이 아닌, 소유한 기체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 (질문 9)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 (답변)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제원 및 성능표를 참고하여 작성,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제원 및 성능표 사진첨부 가능

<제원 및 성능표 예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118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 서식>

| | | | | |
|------------------|---------|--|---------------|--|
| 주 요 제 원 | 최고속도 | | 엔진형식 | |
| | 순항속도 | | 자체중량 | |
| | 실속속도 | | 최대이륙중량 | |
| | 길이×폭×높이 | | 연료중량 | |
| | 탑승인원 | | 카메라 등 탑재여부 | |

*최고속도 : 해당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재

*순항속도 : 연속적인 정상비행을 계속할 때 사용되는 속도

*실속속도 : 실속(급격히 양력을 상실하여 비행을 유지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

*탑승인원 : 해당장치의 탑승인원을 기재

*엔진형식 : 해당기체에 사용된 엔진형식 기재

*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 해당 기체의 자체중량 및 최대이륙중량을 기재

*연료중량 : 해당제원이 있는 경우 기재

*카메라 등 탑재여부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제원표에 해당 제원이 없는 경우, 해당내용 미기재

○ (질문 10) 보관처가 무엇인가요?

☞ (답변) “보관처”란 기체를 비행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기체를 보관하는 지상의 주된 장소를 말합니다.

○ (질문 11) 변경·이전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변경사유”란 용도,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보관장소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전사유”란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12) 말소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말소사유”란 다음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1.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된 경우
- 2.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 3.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 4.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 (질문 13) 변경 및 이전신고 시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변경 및 이전신고 시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드론원스탑 시스템에서 변경·이전 신청

▶ 변경신고 증빙서류 예시(아래 예시된 서류 중 해당내용 증명되는 서류 첨부)

* 해당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기타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사유 | 증빙서류 예시 | 발급방법 |
|-------------------|--------------------------------------|-----------------------------------|
| 비행장치의 용도변경 |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
| 소유자성명 변경(개명) | -기본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시/구/읍/면 |
| | -주민등록초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 -정부24, 동/시/구/읍/면 |
|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경사항 포함) -부동산 계약서 | -정부24, 동/시/구/읍/면 - |
| 사업자 명칭 또는 주소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법원 등기소 |
| |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유에 해당내역 명시) |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
| 보관처 변경 | -보관처 변경 전 주소, 사진과 보관처 변경 후 주소, 사진 | - |
| 소유권 이전 | -매매계약서 -소유증빙확인서(별첨2) 등 | - |

○ (질문 14) 신고증명서를 분실하였는데,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드론원스탑시스템(무인비행장치)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직접 다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 <https://drone.onestop.go.kr>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현황 → 처리완료된 신청번호 클릭 후 첨부파일 다운

☞ (답변) 예전 지방항공청을 통해 신청하였거나, 방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별도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e-mail 또는 Fax) 합니다.

○ (질문 15)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대상이 2021.1.1.부터 비영리인 경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변경되었는데, 이전에 갖고 있는 미신고대상 기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개정법령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까지 신고 필요하며, 이전에 지방항공청에 신고 완료하여 신고번호를 발급 받은 기체는 다시 신규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 (질문 16)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변경·이전, 말소 포함)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문 17) 신고증명서는 항상 소지하여야 하나요?

☞ (답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 (질문 18) 신고번호는 왜 기체에 표시해야 하나요?

☞ (답변)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토록 의무화하여, 사고 등 발생 시 해당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 (질문 19) 신고번호는 어느곳에 표시해야 하나요?

☞ (답변) 신고번호 표시는 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및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20)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전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시 보험가입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험가입 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항공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